

◆ 2020년 위험물안전관리법 **기본서 정오표** : **오류 및 시행령개정포함(2020. 7. 14.)**

■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오탈자 등은 제외

변경 전	변경 후
<p>Page 25. 비고 5. 금속분</p> <p>1. 금속분(금속의 분말)</p> <p>◎ 알루미늄분(Al), 아연분(Zn), 티타늄분(Ti), 코발트분(Co), 크롬분(Cr), 망간분(Mn), 금분(Au), 은분(Ag) 등</p>	<p>Page 25. 오류 정정</p> <p>비고 5. 금속분</p> <p>1. 금속분(금속의 분말)</p> <p>◎ 알루미늄분(Al), 아연분(Zn), 티타늄분(Ti), 크롬분(Cr), 망간분(Mn), 금분(Au), 은분(Ag) 등</p> <p>(★코발트분은 금속분이 아님)</p>
<p>Page 189. VII 지위승계 신고 신청서류</p>	<p>Page 189. 오류 정정 VII 용도폐지 신고 신청서류</p>
<p>Page 397. <신설 및 시행 2020. 7. 14.> VI.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[시행령 제19조의2①~⑤] <신설 및 시행 2020. 7. 14.></p> <p>1.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누출·화재·폭발 등의 사고 조사에 필요한 경우 자문을 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사고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. [법 제22조의2③]</p> <p>2.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법 제22조의2④]</p> <p>3.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등 [시행령 제19조의2①~⑤] <신설 및 시행 2020. 7. 14.></p> <p>①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</p> <p>② 위원 및 위원장의 임명 또는 위촉</p> <p>㉠ 위원 :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</p> <p>㉡ 소속 소방공무원</p> <p>㉢ 기술원의 임직원 중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</p> <p>㉣ 안전원의 임직원 중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</p> <p>㉤ 위험물로 인한 사고의 원인·피해 조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</p> <p>㉥ 위원장 : 위원 중에서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</p> <p>③ 제2항 ㉡부터 ㉥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</p> <p>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,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.</p> <p>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</p>	
<p>Page 800. 문제 48번 정답 ⊕</p>	<p>Page 800. 정답 정정 문제 48번 정답 ④</p>
<p>Page 862. 문제 143번 지문</p> <p>④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의 ~~~~</p>	<p>Page 862. 오류 정정 문제 143번 지문</p> <p>④ 일반취급소의 ~~~~</p>